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4~42
----------	---------

제출일자	2004. 9.
제출자	거창군수

□ 개정사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시행('99.8.9)이전의 기존 건물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 하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자동납부 시 요금 할인으로 인한 체납방지 및 징수율 제고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시행('99.8.9)이전의 기존 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전체건물이 아닌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건물을 기준으로 함.
(안 제16조제2항제4호)
- 하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개정근거

- 환경부훈령 제575호(2004. 5. 24)
- 지방자치법 제15조
- 군수방침(2004. 3. 26)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 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건물 등의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하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당해 납기 월액 하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원인자부담금)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u>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u> 거창군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 비용을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6조(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 ----- ----- -----<u>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건물 등의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u> ----- ----- ----- ----- ----- ----- ----- ----- -----.</p> <p>제18조의2(요금의 할인) ① <u>군수는 하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당해 납기월액 하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u>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p>